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 4. 29 선고 2020가단204987(본소), 2021가단209163(반소) 판결
[계약금 반환 등 청구의 소 · 용역비]

전 문

원고(반소피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성

담당변호사 박헌권

피고(반소원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길

담당변호사 이병일, 이현용

변 론 종 결 2021. 3. 25.

판 결 선 고 2021. 4. 29.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70,976,000원 및 그 중 14,388,000원에 대하여는 2019. 7. 15.부터, 14,388,000원에 대하여는 2019. 12. 6.부터, 2,2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12. 9.부터, 4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3. 3.부터 각 2021. 4. 29.까지 연 6%,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50%는 피고(반소원고)가, 나머지는 원고(반소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194,476,000원 및 그 중 14,388,000원에 대하여는 2019. 7. 15.부터, 14,388,000원에 대하여는 2019. 12. 6.부터, 2,2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12. 9.부터 각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연 6%,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163,5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68,9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본소,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기초사실

가. ‘C’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인 원고는 2019. 7. 3. ‘D’를 운영하는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E 검사기기 검사소프트웨어’를 만들어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제2조(계약 물품명)

1. 본 계약의 공급 물품명은 “E 검사기기 검사소프트웨어”로 한다.
2. 공급량은 총 1set로 한다.
3. 제품은 소프트웨어와 그 개발에 따른 모든 소스를 포함한다.

4. 공급처는 발주처가 요청하는 규격에 따라 상기의 계약 물품을 발주처의 지정 장소에 납품한다.

제3조(계약내용)

1. E 센터측정 소프트웨어
 2. E 검사기기와 차량과의 거리측정 소프트웨어
 3. E 광도검사 소프트웨어
- 1) 본 검사는 하이빔과 로우빔 측정이 가능해야 한다.
 - 2) 본 검사는 E의 Cut-off 라인을 측정해야 한다.

제4조(계약기간)

이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대금지급 완료일까지로 한다.

제5조(계약금액)

1. 계약금액은 32,70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한다.
2. 10회의 현장 출장비가 포함되어 있으며 추후 현장출장이 증가할 경우 1일 300,000원을 지불한다.

제6조(대금지급 방법 및 절차)

1. 대금 지급은 아래와 같이 지불하나 상호 협의 하에 수정 변경 가능하다.
-지급방법 : 계약시 40%(13,080,000원), 설치 후 40%(13,080,000원), 검수 후 20%(6,540,000원)

제7조(대금지급 지연)

위 제5조항에 의거 대금지급의 지연시 총 계약금액의 3/1,000을 지연 날짜별로 계산한다. 단 총 금액이 계약금액의 1/2을 넘지 않는다.

제8조(제품의 납입)

1. 위 장비는 정식 계약체결 후 2.5개월 이내 발주처가 지정한 장소에 납입한다.
2. 납입기일의 지연시 총 계약금액의 3/1,000을 지연 날짜별로 계산하여 장비의 지불금액에서 차감한다.

제9조(무상수리 및 A/S)

장비의 무상 보증기한은 장비 검수 완료 후 1년이다.

제10조(계약의 해제/해지 및 손해배상)

1.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15일간의 기간을 두어 이의 시정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시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 계약 및 발주서와 관련된 계약을 해제,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은 총 계약금액의 5배로 한다.

- (1) '공급처'가 첨부된 사양서 상 제품 상세 스펙 등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 (2) '공급처'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기일 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않을 경우
- (3) '발주처'가 본 계약 제5조에 명기된 총 계약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계약기간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위 'E 검사기기 검사소프트웨어'는 F기관에서 발주한 자동차 E 검사기기에 탑재될 소프트웨어로서 주식회사 G가 F기관에 납품할 예정이었는데, 원고는 주식회사 G로부터 위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도급받아 다시 피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개발한 'E 검사기기 소프트웨어'를 검사기기에 설치한 다음 2019.

11. 9. F기관 안양검사소에서 원 · 피고측 관계자, 주식회사 G 및 F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성능검사를 실시하였는데, 검사기기가 주변 빛의 영향으로 E의 중심부를 측정하지 못하고 검사 측정치에 허용오차 이상의 오차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로 F기관의 납품 승인을 받지 못하였다.

라. 이후 원 · 피고측 관계자와 주식회사 G 담당자가 문제점에 대한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지만 2020.

1. F기관 성남검사소에서 실시된 성능시험에서도 F기관의 납품 승인을 받는 데 실패하였다.

마. 피고는 2020. 2. 10. 원고에게 피고의 직원들이 모두 퇴사해버려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소프트웨어 공급업무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되었음을 통보하였다.

바.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2018. 7. 15.과 2019. 12. 6.에 각 14,388,000원, 2019. 12. 9. 2,200,000원 합계 30,976,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내지 8, 11 내지 19, 23, 2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20. 2. 10.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채무의 이행을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계약 해제 의사가 담긴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2020. 3. 2.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30,976,000원을 반환하고, 이 사건 계약서 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손해배상 예정액 163,500,000원(= 32,700,000 × 5) 약정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손해배상 예정액의 감액

민법 제398조 제2항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부당히 과다한 경우'란 채권자와 채무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당시의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그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여기에서 '손해배상의 예정액'이란 문언상 배상비율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비율에 따라 계산한 예정배상액의 총액을 의미한다(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35771 판결,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0다54536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각 증거들과 갑 제20, 2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 ·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은 궁극적으로 F기관 자동차검사소의 자동차검사에 사용할 E 검사기기의 개발을 위한 것이었는데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F기관에 대한 계약 이행이 상당히 지체된 점, 이 사건 계약에서 원고의 대금지연으로 인한

자연손해금은 총액이 계약금의 1/2을 넘지 않는 것으로 약정한 점, 원고와 주식회사 G 사이, 그리고 주식회사 G와 F기관 사이의 계약 금액1),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원고는 다른 업체와 다시 계약을 체결하고 소프트개발을 진행하여 현재 개발이 완료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입었거나 입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전체적인 손해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위 손해배상 예정액은 부당히 과다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40,000,000원으로 감액한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상 피고가 개발해 납품할 ‘E 검사기기 검사소프트웨어’의 성능 및 사양 등에 대한 기준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분쟁이 발생하였을 뿐이지 피고가 납품한 소프트웨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계약서 제3조에 ‘본 검사는 하이빔과 로우빔 측정이 가능해야 하고, E Cut-off 라인을 측정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의 주장은 위와 같은 계약서상의 요구 성능 및 사양이 모호함에도 원고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소프트웨어의 성능이 부족하다면서 일방적으로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는 취지이나, ①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된 계기가 되는 F기관의 제안요청2)에 “자동차 전조등 시험기는 수검차량 전조등 전방 1m±300mm 위치에서 정대시킨 상태에서 스스로 상향등과 하향등 검사를 진행하고 판정할 수 있어야 한다”, “검사기기는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69조 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 12에서 정하는 기계기구의 정밀도검사 기준 및 검사방법에 적합하여야 한다”, “측정부는 원형, 이형, 프로젝션, 2등식, 4등식 등 자동차가 제작한 모든 형태의 램프가 측정 가능해야 한다”, “할로겐, 실드빔, HID, LED 펄스제어식 등으로 작동되는 전조등램프의 주행빔, 변환빔의 광도 및 광축이 측정되어야 한다”, “AFLS 램프(DBL 기능포함)등의 이동에 따른 Cut-off라인도 측정해야 한다” 등 요구되는 소프트웨어의 성능 기준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원고와 주식회사 G 사이의 개발계약서에도 “수검차량 전조등 전방 1m±300mm 위치에서 정대시킨 상태에서 스스로 상향등과 하향등을 검사할 수 있어야 한다. 전조등

종류는 자동차가 제작한 모든 형태의 램프가 측정 가능해야 한다(원형, 각형, 이형, 프로젝션, 2등식, 4등식, 할로겐, 실드빔, HID, LED),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69조 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 12에서 정하는 기계기구의 정밀도검사 기준 및 검사방법에 적합하여야 한다”고 F기관의 요구사항과 같은 성능 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③ 피고가 위와 같은 경위로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고, 소프트웨어 개발과정에서 구체적인 요구사항 관련 자료는 기본적인 자료로서 당연히 제공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위 소프트웨어가 자동차검사소에서 검사를 받는 다양한 자동차의 E가 기준에 적합한 성능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측정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이므로 피고로서도 당연히 그 목적에 맞게 통상적으로 기대되고 요구되는 정도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다고 보이고, 따라서 그에 맞추어 업무를 수행하였어야 한다고 보이는 점, 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개발한 소프트웨어의 문제로 인하여 한국교통공단에서 여러 차례 실시한 성능시험에서 성능미달로 납품승인을 받지 못한 점 등 앞서 든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미지급 용역대금

(1)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용역대금 중 아직 지급받지 않은 6,540,000원의 용역대금의 지급을 구한다.

(2) 도급계약에서 도급인은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의 제공이나 일의 완성이 있을 때까지 그 보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법리는 이 사건 계약과 같은 소프트웨어 개발·공급계약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 소프트웨어가 거의 완성되어 약간의 보완을 가하면 업무에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인데도 도급인이 프로그램의 내용에 대하여 불만을 표시하며 수급인의 수정, 보완 제의를 거부하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을 완성하지 못한 수급인은 기성 부분의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다10014(본소), 2014다10021(반소) 판결 참조.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납품한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검사기기가 주변 빛의 영향으로 E의 중심부를 측정하지 못하는 현상과 검사 측정치에 허용오차 이상의 오차가 발생하여 F기관의 승인을 받지 못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러한 하자는 검사기기가 핵심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어서 중대한 결함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수개월간의 보완 작업을 거쳐서도 위와 같은 결함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피고는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이라는 채무를 완성하지 못하였고, 따라서 기성 부분의 보수를 청구할 수도 없다.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측정 카메라 교체비용

(1)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의 이행을 위해 측정 카메라를 교체하는데 필요한 비용 7,000,000원 중 2,000,000원만 지급받았음을 들어 나머지 5,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2) 원고는 측정 카메라 교체비용에 관하여 주식회사 G와 원, 피고 사이에 원고가 2,000,000원, 주식회사 G가 5,000,000원을 이 사건 계약금액 외에 추가지불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였는바(2020. 7. 14.자 준비서면), 원고 주장과 달리 위 5,000,000원의 비용 지급을 약속한 것이 원고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현장 추가테스트 실시비용

(1) 원고는 기본 10회의 현장 테스트 외에 추가 현장테스트를 실시할 경우 회당 300,000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하는 이 사건 계약 약정에 따라, 기본 10회의 테스트를 제외한 55회의 추가 테스트에 관하여 16,500,000원(= 55회 × 300,000원)의 테스트 비용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이 사건 계약서 제5조의 추가 테스트비용 지급약정은 정상적으로 계약이 이행되어 납품과 테스트가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하는 취지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피고의 귀책사유로 납품된 소프트웨어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하게 된 테스트에 필요한 비용까지 원고가 지급하기로 하는 취지의 약정이라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추가 옵션 기능개발비용

(1) 피고는 원고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계약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추가 기능을 개발하는데 40,420,000원이 들어갔으므로 이를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피고가 주장하는 기능들은 이 사건 검사기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여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로 보일 뿐 계약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추가 기능에 해당하는지 의문일 뿐만 아니라,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계약 외에 위와 같은 기능을 추가 개발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 성립된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마. 측정카메라 및 카메라케이블 미반환에 따른 손해배상

(1) 피고는 원고의 요구로 테스트를 실시하면서 측정 카메라와 카메라케이블을 480,000원에 임차해 사용하였는데, 테스트가 종료된 이후에도 원고가 이를 반환하지 않아 위 임차료 상당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한다.

(2) 그러나 피고가 측정 카메라와 카메라케이블을 480,000원에 임차해서 이 사건 계약 이행을 위한 테스트에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그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 480,000원은 계약 이행을 위해 피고가 지출해야 할 비용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또 임차한 목적에 따라 실제로 테스트에 사용한 이상 임차비용 상당 손해가 피고에게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70,976,000원(=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30,376,000원 + 손해배상으로 40,000,000원) 및 그 중 14,388,000원에 대하여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2019. 7. 15.부터, 14,388,000원에 대하여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2019. 12. 6.부터, 2,200,000원에 대하여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2019. 12. 9.부터, 손해배상금 4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20. 3. 3.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4. 29.까지는 상법에 정해진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값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며, 피고의 이 사건 반소청구는 이유 없다.

판사 정상철

1) 이 사건 계약 금액 32,7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원고와 주식회사 G 사이 계약금액
71,500,000원, 주식회사 G와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 계약금액 93,668,000원(갑 제17호증의 1)

2) 갑 제17호증의 2